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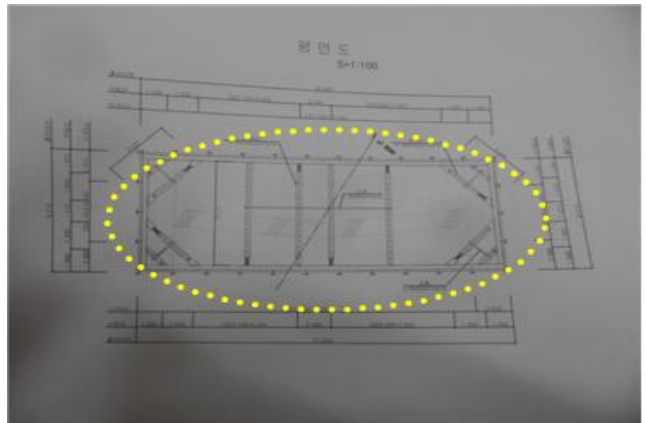
[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(공원 및 주차장)]

- 점검일시 : 2018.07.06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전용현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A1 교대작업장의 흙막이가시설은강지보가 미 설치된 상태에서 백호를 통하여 과굴착을 하고 있어 붕괴재해 우려가 있으니, 신속하게 지보재를 설치 후 작업하기 바람.
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30
(흙막이공사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A2교대의 흙막이가시설은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① 하부 노출된 사면은 붕괴방지를 위하여 토류 판 즉시 설치 요망

(건설사업관리단에서 기 업무지시 하였으나 미이행 중)

② 흙메우기 하부구간이 미용접되어 있으니 보완 요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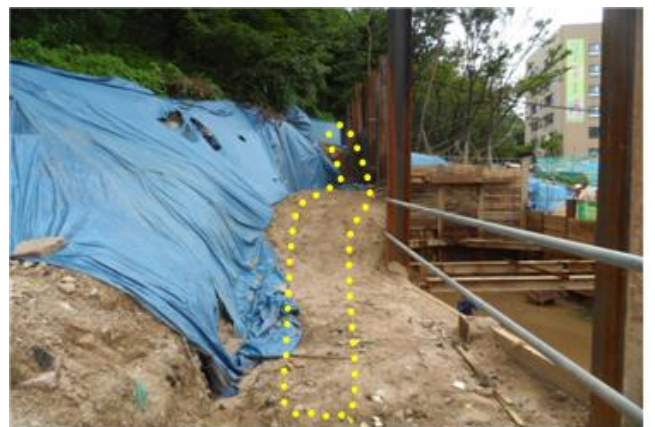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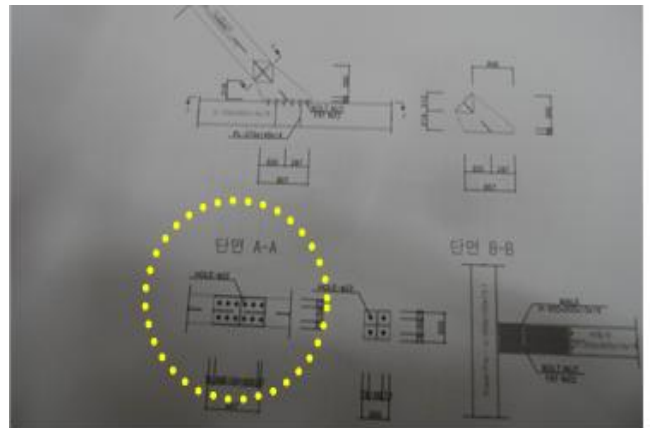
③ 볼트가 미체결된 화태쌓기부 즉시 체결 요망

④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는 강우 시 즉시 우수가 배출되어 토압이 증가되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30

(흙막이공사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하수Box 공사를 위하여 설치중인 흙막이가시설은 붕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- ① 띠장 등의 강재가 미설치되어 있어 붕괴 재해 우려가 있으니 보완 요망
- ② 띠장 흠메우기 하부구간이 미용접되어 있으니 보완 요망.
- ③ 토류판을 기대여 가설계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 보완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30

(흙막이공사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8

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교통방송국측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작업장 상부는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

(추락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방재난본부 리모델링 공사장은 수평개구부가 안전시설 없이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,
- 안전난간 및 추락위험표지를 설치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

(추락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교통방송국측 지하의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작업장은 기존 구조물의 잔재낙하로 인하여 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1

(낙하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교통방송국측 작업장의 세륜기는 접지가 미설치되어 있어 감전 재해 우려가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18

(기계기구 접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A2교대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사면에 설치한 분전반은 급경사로 근로자가 조작을 위하여 이동 시 전도 등의 재해 우려가 있으니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가설계단형태의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45
(작업자 통로확보 및 안전작업기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교통방송국측 지하의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장 콘크리트 타설 시 근로자 작업장소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비계는 추락 및 붕괴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

- ① 비계 기둥이 철근으로 되어 있어 좌굴에 의한 붕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완 요망
- ② 작업발판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근로자 추락방지 대책 강구 요망.
- ③ 가설계단은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3
(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A2교대 흙막이 가시설 앞 도로는 살수차 및 PE방호벽으로 인하여 차도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니,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작업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- ① 거푸집 잔재 제거 및 곰보발생부 보수
- ② 철근노출부 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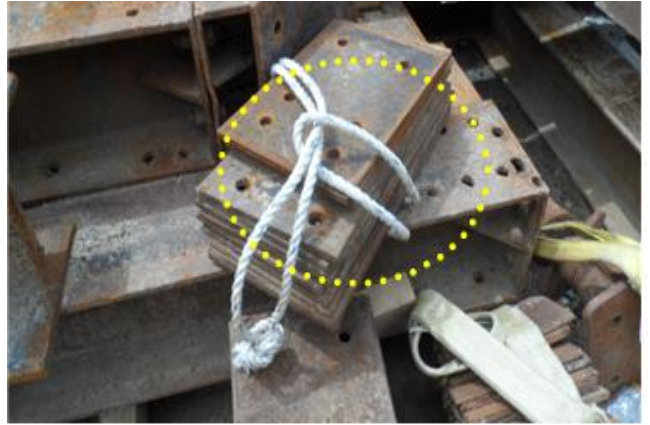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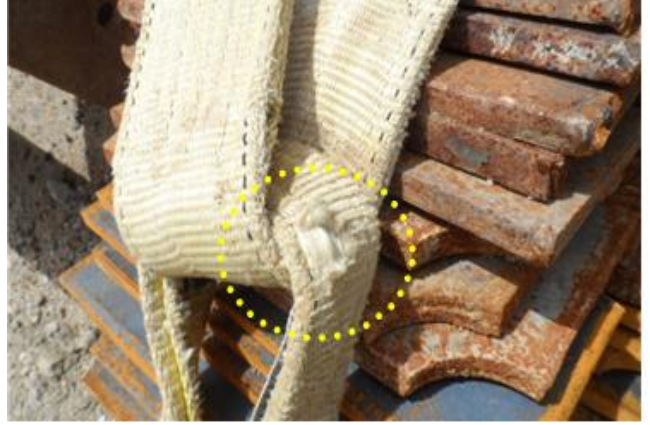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교통방송국 작업장은 인양중 낙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- ① 페드럼통을 천공하여 운용중인 자재운반구 사용 중지 요망.
- ② 마모가 심한 슬링벨트 폐기 조치 요망.
- ③ PP로프를 이용한 강재운반을 지장하고 전용 자재운반구를 사용하기 바람.



④ 하카는 용수철 부위가 파손되어 자재조임력이 상실되어 있으니 보수 후 사용하기 바람.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예정숲측에서 상차작업중인 백호는 갓길붕괴로 인하여 전락사고가 발생할 시 삼일대로에 주행중인 차량에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,
- 장비작업계획서에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하기 바람.

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29
(건설기계)

